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입주자모집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법인(이하 “주택공급자”라 한다)”으로, 제21조제4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주택공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2. 국방부장관의 주택공급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국방부장관은 입주자모집 승인 검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체”를 “주택공급자”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택공급자에게 「사이버건본주택 운용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이버건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건본주택을 말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시·군·구”는 “국방부”로 본다.

제7조의4(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2. 위반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된 대상자들의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주택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국방부장관 및 주택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5(과태료)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6(분양가격 제한 등) 제7조의3 내지 제7조의5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및 입주자의 거주 의무, 거주실태 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 ~ ③ (생략)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입주자모집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

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법인(이하 “주택공급자”라 한다)”으로, 제21조제4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주택공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2. 국방부장관의 주택공급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국방부장관은 입주자모집 승인 검토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 설>

제2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체”를
“주택공급자”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4
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주택공급자에게 「사이
버건본주택 운용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이버건본주
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건본주택을 말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
치·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 조의2 제5항에 따라 분
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70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

<신 설>

<신 설>

<신 설>

부장관”으로, “시·군·구”는 “국방부”로 본다.

제7조의4(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 부터 10년까지로 한다.

2. 위반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된 대상자들의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주택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국방부장관 및 주택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5(과태료)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6(분양가격 제한 등) 제7조의3 내지 제7조의5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및 입주
자의 거주 의무, 거주실태 조사,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에 관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891